

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(안)

1 관련근거

- 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 (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)
-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(의회에 대한 보고)
-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('25.2.25.)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(안) 보고
- 제2025-10회 이사회('25.11.27.)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(안) 원안의결

2 개정사유

- 「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」 협약 갱신에 따른 한시정원 증원
- 9호선운영부문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별도정원 증원

3 주요내용

- 정원조정 : 50명 증원 (한시정원 35명, 9호선운영부문 별도정원 15명)
 - 「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」 한시정원 35명 증원
 - 하남선(하남시 위탁구간, 4역 / 6.6Km) 위수탁협약 갱신 시 인력증원 합의
 - 근무형태 변경사항(기존 3조 2교대 → 변경 4조 2교대) 반영
 - 하남선 최초협약('19.10월) 177명 → 협약갱신('25.3월) 212명
 - ※ 서울시 사전 승인사항(市 도시철도과-3448, '25.3.17.)
 - 9호선운영부문(CIC) 별도정원 15명 증원
 - 안전을 위한 2인 1조 근무원칙 준수 : 고객안전분야 12명 증원
 - 외부기관(국토교통부) 지적사항 반영 : 궤도분야 3명 증원
 - ※ 서울시 사전 승인사항(市 도시철도과-10400, '25.8.25.)

- 붙임 1.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2.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세부 설명자료 1부. 끝.

현 행									개 정 안								
[별표2] 정 원 표(제26조 관련)									[별표2] 정 원 표(제26조 관련)								
총 정 원	임 원	일 반 직					청 원 경 찰	한 시 정 원	총 정 원	임 원	일 반 직					청 원 경 찰	한 시 정 원
		계	1 급	2 급	3 급	4급 이하					계	1 급	2 급	3 급	4급 이하		
16,606	7	15,945	45	199	1,362	14,339	14	640	16,641	7	15,945	45	199	1,362	14,339	14	675
※ 한시정원은 해당 사업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까지 운영한다. ※ 9호선운영부문(CIC) 정원(297명)은 9호선운영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								※ 한시정원은 해당 사업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까지 운영한다. ※ 9호선운영부문(CIC) 정원(312명)은 9호선운영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							

보 고 사 항

○ 한시정원 증원 35명

- 하남선 관리운영사업 협약갱신에 따른 한시정원 증원 반영(35명)

○ 9호선운영부문 별도정원 증원 15명

- 9호선(2, 3단계) 관리운영계획 상 증원 반영(고객안전분야 12명, 궤도분야 3명)

※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('25.2.25.) 보고사항

① 역 안전인력 증원 232명(일반직 정원)

- 역사 근무 조당 3인 확보를 위한 증원(1인 근무 시 화재 등 사건·사고 신속 대응 한계)

② 9호선운영부문(CIC) 증원 29명(별도정원)

- 1단계 구간에 위탁중인 기관사 업무 직영화('25.4.1.) 필요인력 28명
- 총 정원 증가(300명 초과)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자 전담인력 1명

⇒ '25. 2월, 市에 인가 요청 (현재까지 市 검토중)

□ **하남선(5호선) 수탁사업 재협약 관련 한시정원 증원 (+35명)**

○ 사업 개요 : 5호선 하남선 연장 (미사역~하남검단산역, 4역 6.6Km)

- 사업명 :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·수탁 사업
- 협약기관 : **공사 ⇄ 하남시 (수탁기관 : 서울교통공사)**
- 협약기간 : '25. 8. 8.부터 3년('25. 4. 2. 갱신협약체결)
- 업무범위 :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 관리, 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, 유지보수 및 기타 제반 업무 등 (역무, 관제, 승무, 전동차 4대 32칸, 기술)



○ 한시정원 정원증원 주요내용 : **+35명**

- 위·수탁 협약 갱신에 따른 사업 운영인력 조정 (177명 → 212명, 증 35명)
- (당초) 3조2교대 → (변경)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분야별 소요인력

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역무 (사무)	승무	관제	차량	기술(관제 별도)										
						소계	전기	통신	케도	신호	기계	전자	건축	토목	PSD	승강기
현정원	177	51	24	4	19	79	16	8	11	16	7	7	3	4	7	-
(신규) 증원	+35	+4	-	+2	+5	+24	+1	+2	+1	+4	+3	-	+3	+5	-	+5
개정(안)	212	55	24	6	24	103	17	10	12	20	10	7	6	9	7	5

※ 기존 1~8호선 구간의 유지관리 업무조건,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지관리 업무수행 효율성 확보
승무분야는 열차운영의 유동성 감안, 갱신협약 개시 시점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상호 협의하 인원조정 가능

[참고] 한시정원이란?

- 위·수탁협약에 의해 공사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인력으로 해당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일반직 정원
- '25년 12월 현재, 공사는 총 4개 연장구간 위수탁사업에 640명의 한시정원을 운영 중(정관 개정 시 675명)
 -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(177명), 진접선 관리운영(118명), 7호선 연장구간 운영(102명), 별내선 관리운영(243명)

□ 9호선운영부문 수탁사업 관련 별도정원 증원 (+15명)

○ 사업 개요 : 9호선 2·3단계 (언주역~중앙보훈병원역, 13역 13.64km)

– 사업명 : 9호선 2·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·수탁 사업

– 협약기관 : **공사 ⇄ 서울시** (수탁기관 : **서울교통공사**)

– 협약기간 : '23. 10. 1.부터 58개월('23. 9. 26. 갱신협약체결)

– 업무범위 : 여객운송, 차량 정비 및 열차 운행관리, 시설 유지·보수 및 부대사업, 시책사업 수행 등 시에서 요구하는 업무 등



○ 9호선운영부문은 CIC로 운영, 관련 정원 정관 및 직제규정 별도 명시

[참고] CIC란?

- 'Company In Company'의 약자로 '사내독립기업'을 뜻함.
- 사업별 독립기업형 조직의 형태로 기획기능, 회계·자금·구매 등 재무기능, CIC 내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 및 책임, 법무와 총무 기능 등 독립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과 기능을 행사

– 9호선 2·3단계 구간 운영이력

· '15. 4. 3. ~ '18. 11. 27.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운영(자회사)

· '18. 11. 28. ~ 현재. 자회사 청산 및 CIC체제 운영

※ 직영전환은 9호선운영(주) '18년 노사 부대약정서('18. 8. 26.)에 따라 추진

○ 9호선운영부문 정원증원 : **+15명(별도정원)**

– 9호선운영부문 **신규 15명 증원**

– 시민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**2인1조 근무 원칙 확보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**

(토목·건축·궤도 통합 운영) 반영 (고객안전12명, 궤도3명 증원)

(단위 : 명)

구분(직종)	계	부문장	고객 안전	운전	차량	전기	신호	통신 전자	시설			기계	특수 보안 요원
									토목	건축	궤도		
현정원	297	1	115	82	2	20	20	14	5	5	5	21	7
(신규) 증원	+15	-	+12	-	-	-	-	-	-	-	+3	-	-
개정(안)	312	1	127	82	2	20	20	14	5	5	8	21	7

※ 기관사 업무 직영화(328회 임시회 보고사항) 필요인력 등 29명 市 인가 검토 중

《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('25.2.25.) 보고사항 》

□ 정원조정(증원) ⇒ 현재 市 인가 검토중

① 지하철 안전인력 232명 증원(16,606명 → 16,838명)

- 1인 근무 시 지하철 화재 등 사건·사고 신속 대응 한계(조당 3인 확보)
- 안전확보 소요인력 368명 중 136명 자체 재배치하고 232명 증원

② 9호선 운영부문(CIC) 별도 정원 29명 증원(297명 → 326명)

- 1단계 구간에 위탁중인 기관사 업무 직영화('25.4.1.) 필요인력 28명
- 총 정원 증가(300명 초과)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자 전담인력 1명

※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불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)

□ 기구변동 : 市 직제규정 개정 승인('25.6.23.) ⇒ 기구신설 완료('25.7.10.)

-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정보보호 전담부서 의무설치 따른 「정보보안처」 신설
- 자산 5조 원 이상 공기업의 처·실 급 이상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